

에너지진단 면제(에너지진단주기 연장) 신청 결과통보
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(에너지진단주기 연장)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사업장 명칭		대표자	
사업자등록번호		신청업체 번호	
소재지			
면제 또는 주기연장 여부 및 사유			
에너지진단주기 만료기한	20 년 월 까지		
<p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</p>			
※ 비고: 에너지진단을 면제받거나 에너지진단주기가 연장된 자는 에너지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이전까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신청(계약체결을 포함한다) 후 에너지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			